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어 촌 · 어 항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시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, 어촌·어항발전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시 어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「어촌·어항법」이 일부개정(시행 2021.6.23., 법률 제17749호, 2020.12.22. 공포)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어촌의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(안 제3조 제1항제10호)

-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에 추가

나. 어항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편익 증진사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추가(안 제20조제7항)

- 어촌지역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, 교통시설 관련 내용 포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3. 19. ~ 4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

제2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편익 증진계획의 필요성
2.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
3.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
4.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초조사·정밀조사의 내용 등)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 10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제3조(기초조사·정밀조사의 내용 등) ①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도서지역 여객선 통항 등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</u>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0조(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<u>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1. <u>교통편익 증진계획의 필요성</u> 2. <u>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</u> 3. <u>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</u> 4. <u>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</u>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⑦ (생략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52